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장홍용 〉

1. 안 건 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5-97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8월 14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5년 8월 18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 마포구 추경예산안 총괄

○ 마포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38억 5,7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318만 4천원 대비 192억 5,394만 2천원 (2.06%)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122억 3,0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 5,394만 2천원(2.16%)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 사항 없음.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53,857,126	934,603,184	19,253,942	2.06%
일 반 회 계	912,230,859	892,976,917	19,253,942	2.16%
특 별 회 계	41,626,267	41,626,267	0	0

※ 기정예산 : 2025.7.29.기준 (2025 본예산 + 1차 추경 + 간주예산)

2. 복지동행국 추경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2회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편성 사항 없음.
- 2025년도 제2회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493억 3,53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81억 6,183만 5천원 대비 11억 7,353만 2천원(0.34%) 증가하였음.

□ 복지동행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49,335,367	348,161,835	1,173,532	0.34%
일 반 회 계	348,403,808	347,230,276	1,173,532	0.34%
특 별 회 계	931,559	931,559	0	0

□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추경예산(안)	구성비			
합 계	349,335,367	100%	348,161,835	1,173,532	0.34%
복 지 정 책 과	18,188,692	5.21%	18,188,692	0	0
실뿌리복지과	87,271,502	24.98%	87,174,152	97,350	0.11%
어르신동행과	154,596,270	44.25%	154,596,270	0	0
장애인복지과	53,830,158	15.41%	52,757,158	1,073,000	2.03%
가족정책과	35,448,745	10.15%	35,445,563	3,182	0.01%

- 복지동행국에서는 5개 부서 가운데 3개 부서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장애인복지과로 총 2개 사업(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에서 1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실뿌리복지과는 1개 사업(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9,735만원), 가족정책과 1개 사업(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318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3.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

□ 복지동행국 소관 세부사업별 추경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실뿌리복지과 (1건)					
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신규)	97,350	0	97,350	100%
장애인복지과 (2건)					
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866,000	0	866,000	100%
3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신규)	207,000	0	207,000	100%
가족정책과 (1건)					
4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168,332	165,150	3,182	1.93%

□ 복지동행국 사업 내역

○ 실뿌리복지과

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신규]

- 사업내용: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용부(계단, 화장실 등) 마감재 변경 및 철거, 도장 공사 필요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증감률
계	97,350	0	97,350	100%
구비	97,350	0	97,350	100%

- 추가경정사업 현황

(단위: 천원)

추가경정사업 내용	통계목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공용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97,350	0	97,350

❖ 시설비: 설계용역비 22,000천원, 공용부 리모델링 공사비 75,350천원

* 설계용역

- 범위: 사전검토, 현장 실측 및 도서작성,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용도변경, 인테리어 설계(공용부)

* 공용부 리모델링 공사

- 범위: 입구 및 층별 공용부(복도, 계단, 화장실)
- 내용: 철거, 화장실 교체, 복도 및 계단 마감재 변경 등

- 추경사유: 폐원한 노고산 어린이집을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함에 있어, 개별 입주시설[효도밥상경로당, 맘카페·빠카페, 스터디카페] 외 공용부 철거 및 공사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계획(안)

□ 시설현황

- 시설명: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舊노고산어린이집)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0길 15(노고산동)
- 규모: 대지면적 214.9㎡,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306.18㎡)



위치도



전면부 사진



지하1층 입구(복도)-보호용 안전부션, 벽시들



계단-나무소재



화장실-유아용



옥상-놀이시설철거예정

□ 공간 구성(안)

총괄	관리부서	구분	면적	설치시설	구성내용
실뿌리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지상2층	102.06cm	스터디카페	자율학습공간
	가족정책과	지상1층	102.06cm	맘카페·빠카페	소통, 정보공유, 힐링공간
	어르신동행과	지하1층	102.06cm	효도밥상경로당	식사공간, 주방

○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 사업목적: 마포세무서에서 (재)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 시설」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 수익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보해옴에 따라, 2025년 11월 내 납부하고자 함
- 사업내용
 - 2016년 공유재산심의 당시,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푸르메재단에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한 행위가 부동산거래(임대업)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9-18-8²⁾에 따라 현 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유선 통보받음 (2025년 6월, 마포세무서)
 - 2025년 11월 초에 과세 고지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866,000천원)를 납부해야 함
- 추경사유: 2025년 11월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추가 (17,037천원)되며 이후 매일 124,939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 2026년 1월부터는 채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긴급한 예산 편성 필요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18-8 【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증감률
계	3,046,202	2,180,202	866,000	39.72%
시비	1,861,002	1,861,002	0	0.00%
구비	1,185,200	319,200	866,000	271.30%

- 추가경정사업 현황

(단위: 천원)

추가경정사업 내용	통계목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	공공운영비	866,000	0	866,000

❖ 예산액(866,000천원) 세부산출내역(과거 5년간의 부가가치세)

구분	2020년 2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세표준	631,009,600	1,262,019,200	1,262,019,200	1,262,019,200	1,262,019,200
세액 (과세표준의 10%)	63,100,960	126,201,920	126,201,920	126,201,920	126,201,920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표준의 2%)	12,620,192	25,240,384	25,240,384	25,240,384	25,240,384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	6,310,096	12,620,192	12,620,192	12,620,192	12,620,19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기간 경과일당 0.022%)	24,897,745	41,182,210	30,624,157	20,490,143	10,328,364
고지세액	106,928,993	205,244,706	194,686,653	184,552,639	174,390,860

■ 재단법인 푸르메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 주요시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푸르메 직원재활센터,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 규모: 지하3층, 지상7층, 18,571,52㎡
- 준공일: 2015. 12. 30.
- 운영방법: 민간위탁(재단법인 푸르메)

※ 무상사용허가기간: 2015.12.30. ~ 2035.12.29. (20년)

2)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신규]

- 사업목적: 마포구 거주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을 조성하여 고령 시각 장애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
- 사업내용:
 - 마포장애인복지회관(월드컵로 213) 7층 옥상 휴게공간 및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경로당(41.37㎡) 및 화장실(12㎡) 조성
 - 성산동은 마포구 내 고령 시각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내 점자도서실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마포지회 등과 연계하여 고령의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전용 경로당 운영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증감률
계	207,000	0	207,000	100%
구비	207,000	0	207,000	100%

- 추가경정사업 현황

(단위: 천원)

추가경정사업 내용	통계목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공사	시설비	192,000	0	192,000
시각장애인 경로당 집기 물품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0	15,000
합 계		207,000	0	207,000

■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계획(안)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7층
- 면 적: 연면적 138.47㎡ (옥탑1층 휴게공간 구조물, 조경공간 등 포함)
 - *실제 조성 면적(예정): 시각장애인경로당 41.37㎡, 화장실 12㎡
- 추진방법: 장애인복지회관 옥상 유휴공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조성
- 추진계획
 - 고령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경로당 조성
(냉·난방 시설, 시각장애인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이용 편의를 위한 음성 보조기, 오디오북, 안마기 등 비치)
 - 재난 시 자력 대피가 힘든 고령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시설 설치
(방염처리, 소방설비 설치 등)
 -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록을 위한 이용 및 시설 기준
[등록정원 20명 이상, 시설기준(20㎡이상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 장애인복지회관 옥상 조경 공간 일부 활용하여 남녀 화장실 설치
 - 향후 구립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 조성구역(안)



○ 가족정책과

1)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의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급
- 추정사유: 2024년 공무원 단체(임금)협약 및 2025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 반영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 인력 운영
- 아동통합사례관리 서비스 협력 및 조정
 - 타기관과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하여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자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욕구 및 아동발달을 평가하여 사례관리 목표 및 개입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자원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원발굴 및 관리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리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증감률
계	168,332	165,150	3,182	1.93%
균특보조금	64,770	64,770	-	0%
시비	19,436	19,436	-	0%
구비	84,126	80,944	3,182	3.93%

- 추가경정사업 현황

(단위: 천원)

추가경정사업 내용	통계목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요예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3명)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17,000	114,240	2,760
		균 57,120	균 57,120	균 0
		시 17,136	시 17,136	시 0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2024년 호봉표 적용에 의한 부족분)		구 42,744	구 39,984	구 2,760
		구 25,820	구 25,710	구 110
4대 보험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5,612	15,300	312
		균 7,650	균 7,650	균 0
		시 2,300	시 2,300	시 0
		구 5,662	구 5,350	구 312

< 다 음 페이지 계속 >

4. 검토의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마포구 전체 규모는 9,538억 5,712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92억 5,39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9,122억 3,0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억 5,394만 2천원, 2.16%가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16억 2,626만 7천원으로 추경 편성사항 없음.
- 2025년도 제2회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편성 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11억 7,3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122억 3,085만 9천원의 38.19%인 3,484억 38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제2회 복지동행국 소관 추경안은 총 4개 사업으로, 실뿌리 복지과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과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사업 그리고 가족정책과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음.
- 부서별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실뿌리복지과는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추진’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9,735 만원을 증액함. 이는 2025년 4월 30일 폐원된 노고산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뿌리복지센터로 주민체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도밥상경로당, 맘·빠카페, 스터디카페가 구성될 예정임.

추경사유는 1차 추경 시 기본현판 및 간판비용(21,800천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은 확보하였으나, 기존 영유아시설의 공용부(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수리를 위한 추가예산이 발생 되어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음.

○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8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마포세무서에서 2015년 12월 재단법인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한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 되어 현 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안으로, 2025년 11월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추경사유에 대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그러나 향후 무상사용수익허가 종료 시까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 법률 검토 및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은 장애인복지과 신규 편성 사업으로, 마포구 성산동의 마포장애인복지회관(월드컵로 213)의 옥상 휴게공간 및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 및 화장실 조성 비용으로 시설비 1억 9,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총 2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시각장애인 고령자의 일반 경로당의 물리적 환경 등의 제한으로

이동, 정보접근, 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점과 마포구 시각장애인의 61%가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지향 측면에서 사업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가족정책과는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사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재확정(2025. 6.)에 따른 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7만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므로 ① 추경예산의 사업이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②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③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④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비 등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편성근거와 사유가 명확한지, 시급성·적정성 및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적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임.

○ 더불어, 각 부서는 금번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의 재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